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구분되며, 서로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가정에서 식사 준비, 이동, 위생 관리, 병원 동행 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와 인지자극활동을 하고, 식사 준비·개인위생 등 일상생활훈련을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거나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전신목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욕창, 당뇨관리 등의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신체·사회 활동, 인지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 목욕 도움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행, 출장을 가는 동안,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지팡이, 보행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등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160만원(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연한도액 초과 시 수급자 본인 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가정과 비슷한 주거 여건을 지닌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과 그보다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나뉘며,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 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40,450원 지급 ('26.1.1. 기준)

월한도액 한 달 (매월 1일~말일)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전액 이용 시)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0%(기초)
1등급	2,512,900	376,930	226,160	150,770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0	139,870	
3등급	1,528,200	229,230	137,530	91,690	
4등급	1,409,700	211,450	126,870	84,580	
5등급	1,208,900	181,330	108,800	72,530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0	60,860	40,570	